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. 11. 15 선고 2017가단11628 판결

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가등기의 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신우기계 주식회사

변론종결 2017.10.25.

판결선고 2017.11.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81㎡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7.6.27. 접수 제16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1987.6.17.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b 전 81㎡ 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매매하기로 예약하고,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7.6.27.

접수 제16172호로 1987.6.17.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(이하'이 사건 가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식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,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정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바(대법원 2003.1.10.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일자가 1987.6.17.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 사 이